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100015-10

#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2025. 10.



국세청 | 원천세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머리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20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이래 매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100만명 이상이며, 감면액은 1조원을 넘었습니다.

금년부터 "경력단절 여성"은 "경력단절 근로자"로 감면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23년에는 한도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청년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발간하면서 올해 개정세법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하고, 납세자 문의가 많은 주요 상담사례를 수록하여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하였습니다.

본 책자가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와 근로자·원천징수의무자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법인납세국장 심 욱 기

# CONTENTS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1 개요 Page. 1

2 제도 연혁 Page. 2

6 주요 해석 Page. 14

7 질의 및 응답 Page. 28

8 체크리스트 Page. 51




3 감면 요건
Page. 3

4 사후 관리
Page. 10

5 계산사례
Page. 12

9 신청 서식
Page. 52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대상 퇴직자 명세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Chapter 0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로자·회사가 감면신청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최근 법령개정 및 해석 등의 설명을 포함한 안내서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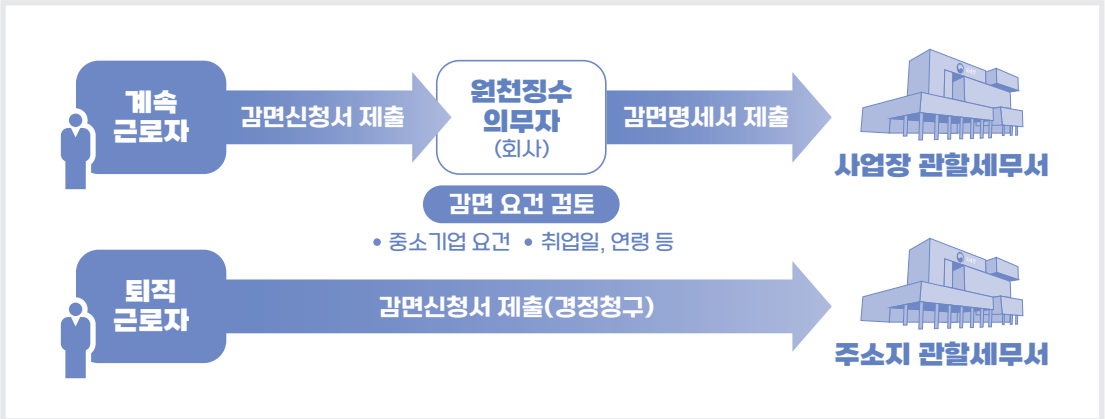
❁ **(현황)** '12년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도입**된 이래 **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혜택이 점차 확대**되었으나,

- 잦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도별로 감면 요건이 상이**하여 **근로자·회사**가 감면대상 판단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요 내용)** 감면대상자 중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단절 근로자"**로 대상자가 확대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감면대상 제외업종으로 분류되었으며,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감면 신청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Chapter 02

# 제도 연혁

## 연도별 주요 개정사항*

| 개정일 | 감면 내용 | 대상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11.12.31.<br>(신설) | 3년간 100% | 청년(15~29세) | '12.1.1. ~ '13.12.31.<br>취업자에 대해 적용 |
| '14.1.1. | 3년간 50% | 60세 이상자, 장애인 추가 | '14.1.1. 이후 취업하여<br>지급받는 소득부터 |
| '15.12.15. | 3년간 70%<br>(한도 150만원) | - | '16.1.1. 이후 취업하여<br>지급받는 소득부터 |
| '16.12.20. | - | 경력단절여성 추가 | '17.1.1. 이후 재취업하여<br>지급받는 소득부터 |
| '18.5.29. | 5년간 90% | 청년(15~34세) | '18.1.1. 이후 지급받는<br>소득부터 |
| '19.1.1. | - | 장애인범위 확대 | '19.2.12. 이후 취업하여<br>지급받는 소득부터 |
| '20.1.1. | 대상업종 확대<br>◆ 창작, 예술 및 여가<br>관련 서비스업 등 |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br>◆ 결혼, 자녀교육 사유 추가<br>◆ 퇴직후 3~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20.1.1. 이후 발생하는<br>소득부터 |
| '22.1.1. | - | 경력단절여성 인정기간 요건 완화<br>◆ 퇴직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22.1.1. 이후 발생하는<br>소득부터 |
| '22.12.31. | 한도 200만원 | - | '23.1.1. 이후 발생하는<br>소득부터 |
| '23.12.31. | 대상업종 추가<br>◆ 컴퓨터학원 | - | '24.1.1. 이후 발생하는<br>소득부터 |
| '25.2.28. | 감면대상<br>업종정비 | 일부 업종 감면제외대상으로 분류 | '25.2.28. 이후 취업하는 자<br>부터 적용 |
| '25.3.14. | 대상자 확대 |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근로자 | '25.3.14. 이후 재취업하여<br>지급받는 소득부터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취업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

| 감면 대상자 | 소득발생 시점 | 감면율 | 감면 한도 |
|---|---|---|---|
| 청년 | **'23.1.1. ~ '26.12.31.** | 90% | 200만원 |
| | '18.1.1. ~ '22.12.31. | 90% | 150만원 |
| | '16.1.1. ~ '17.12.31. | 70% | 150만원 |
| 60세 이상자<br>·장애인 | **'23.1.1. ~ '26.12.31.** | 70% | 200만원 |
| | '16.1.1. ~ '22.12.31. | 70% | 150만원 |
| 경력단절근로자 | **'25.3.14. ~ '26.12.31.** | 70% | 200만원 |

※ 세법개정으로 감면적용기간은 2026.12.31.까지 연장

Chapter 03

# 감면 요건

## ❁ 감면 대상자

| 구분 | 요 건 | 감면기간 | 감면율 | 감면한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br>※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함 | 5년 |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 장애인 등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br>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br>③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br>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 |
| 경력단절 근로자 | ①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을 것<br>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고<br>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br>④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 |

* 청년이 병역이행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취업시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2항을 참고

## ❁ 감면대상 청년 근로자 연령 계산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만 35세 미만을 의미)인 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예시**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만 35세에 근로계약 체결 시 만 35세에서 2년(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인 만 33세로 요건 검토

* **이행 병역** : 현역병(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포함),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연령계산 시 병역대체 복무기간을 빼지 않음

**2025년 세법 개정사항**

###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조특법 §30①, '25.3.14.)

- **(대상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근로자*"로 확대**

  * 조특법 제29조의8 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대상 업종 정비(조특령 §27③, '25.2.28.)

- **(업종 정비) 아래 업종을 감면제외 대상업종으로 분류**

| 업태명 | 종목명 |
|---|---|
| 운수 및 창고업 |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수의업 |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업 |

##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3. 2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않는 경우 제외

## 감면적용 배제

- 2011.12.31. 이전 중소기업체 취업자(경력단절 여성 제외)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의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

-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한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①에 따라 공정위가 지정

##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합니다.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사업분류표(통계법 §22)에 따라 판단

| 구분 | 업종 |
|---|---|
| 감면대상 |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br>2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br>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br>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br>('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br>5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br>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br>(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br>7 부동산업('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br>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br>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br>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수의업은 제외)<br>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br>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br>13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br>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br>스포츠 서비스업('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 감면제외<br>(예시) | 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br>2 보건업(병원, 의원 등)<br>3 금융 및 보험업<br>4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br>5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br>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 중소기업 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 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유예제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

  * (개정) 유예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시행일 : '24.8.21.)

※ 유예제외 사유(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 (개정) 유예기간 3년 → 5년으로 연장(시행일 : '24.8.21.)

2.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3. 법 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중소기업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나.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기준 비교

| 구분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
|---|---|---|
| 업종 | • 모든 업종 | •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주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 주업종 | • 평균매출액*이 큰 업종 | •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
|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규모기준에 따른 평균 매출액<br>• 자산총액 5천억원 | •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음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 독립성 기준 | •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br>•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br>•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 •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br>•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제외<br>• 관계기업간에 합산한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규모기준을 초과하면 제외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

## ❁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 개정, '25.9.1. >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규모 기준 |
|---|---|
|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1차 금속 제조업, **3.** 전기장비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
| **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 가구 제조업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 **7.** 식료품 제조업,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9.**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 건설업, **15.** 도매 및 소매업 |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
| **16.** 농업, 임업 및 어업, **17.** 광업, **18.** 담배 제조업,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 기타 제품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5.** 수도업, **26.** 운수 및 창고업, **27.** 정보통신업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 **28.** 음료 제조업,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34.**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금융 및 보험업, **42.** 부동산업,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44.** 교육 서비스업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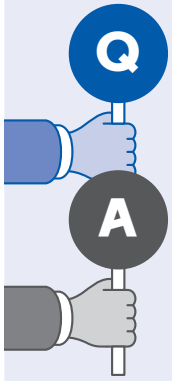
Chapter 4

# 사후 관리

## ❁ 감면 신청 점검

- **(계속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면신청 근로자 명단 중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인하여 적게 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합니다.

**참고**




**2025년에 근무한 사람의 연말정산 시 감면을 잘못 적용하여 적게 징수된 소득세는 언제까지 부과·징수가 가능한가요?**

2025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026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중 잘못된 내역에 대하여 납세자 스스로 정정하여 확정신고가 가능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잘못 적용된 감면 내역을 정정하여 신고하지 못할 경우 2026.6.1.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적게 징수된 금액을 부과·징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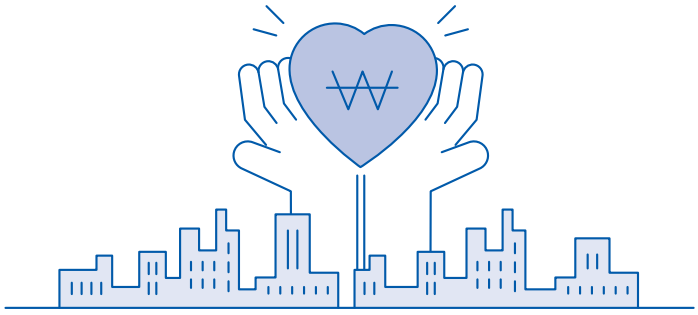
## 감면세액 계산

감면세액(감면대상 근로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감면세액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text{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 \times \left[1 - \left(\frac{\text{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text{산출세액}}\right)\right]$$



Chapter 05

# 계산사례

## ❁ 감면대상 소득과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례 1**

**2024년도 4월에 취업(전근무지 감면 제외 대상)하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한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1. 2024년 총급여 50,000,000원(종전근무지 급여 포함)
2. 현 근무지 총급여 20,000,000원(감면 신청)
3. 종전 근무지 총급여 30,000,000원(감면 제외 대상)
4. 산출세액 3,802,500원
5.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1,368,900원

$$3{,}802{,}500 \times \frac{20{,}000{,}000}{50{,}000{,}000} \times 90\% = 1{,}368{,}900$$

※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율

###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422,400원

$$660{,}000 \times \left(1 - \frac{1{,}368{,}900}{3{,}802{,}500}\right) = 422{,}400$$

※ $\frac{\text{감면적용 전}}{\text{근로소득 세액공제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right)$

## ❁ 감면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사례 2**

**중소기업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자의 2024년 감면세액과 감면 적용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1. 2024년 총급여 50,000,000원
2. 산출세액 3,802,500원
3.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660,000원(감면 미적용 시)

###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세액 : 2,000,000원

$$3{,}802{,}500 \times \frac{50{,}000{,}000}{50{,}000{,}000} \times 90\% = 3{,}422{,}250\text{이나, 한도액 } 2{,}000{,}000\text{원 적용}$$

※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감면율

###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312,859원

$$660{,}000 \times \left(1 - \frac{2{,}000{,}000}{3{,}802{,}500}\right) = 312{,}859$$

※ $\frac{\text{감면적용 전}}{\text{근로소득 세액공제액}} \times \left(1 - \frac{\text{감면액}}{\text{산출세액}}\right)$

##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사례 비교

( 원 )

| 구분 | 청년 감면 | 경력단절근로자 감면 | 감면대상 아님 |
|---|---|---|---|
| 감면율 | 90% | 70% | - |
| ① **총급여** | **36,000,000** | **36,000,000** | **36,000,000** |
| ② 근로소득공제 | 10,650,000 | 10,650,000 | 10,650,000 |
| ③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 25,350,000 | 25,350,000 | 25,350,000 |
| ④ 인적공제 주1)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⑤ 국민연금보험료 주2) | 1,200,000 | 1,200,000 | 1,200,000 |
| ⑥ 건강보험료 주2)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⑦ 과세표준 ( ③ - ④ - ⑤ - ⑥ ) | 20,150,000 | 20,150,000 | 20,150,000 |
| ⑧ 산출세액 | 1,762,500 | 1,762,500 | 1,762,500 |
| 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세액** | **1,586,250** | **1,233,750** | - |
| ⑩ **근로소득세액공제** 주3) | **71,600** | **214,800** | **716,000** |
| ⑪ 표준세액공제 | 104,650 | 130,000 | 130,000 |
| ⑫ 결정세액 ( ⑧ - ⑨ - ⑩ ) | - | 183,950 | 916,500 |
| ⑬ 기납부세액 주4) | 682,200 | 682,200 | 682,200 |
| ⑭ **차가감 납부할 세액** | **△682,220** | **△498,250** | **234,300** |

**주1)** 인적공제는 본인과 배우자만 가정(부녀자 공제 미적용)

**주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 120만원과 100만원으로 가정

**주3)** 716,000(감면적용 전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감면세액/산출세액)

**주4)**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인이고 월급여 3백만원인 경우,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 56,850원 ×12월 = 682,200

Chapter 6

# 주요 해석

## 01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 사실관계

- 국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1. 국민연금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가 되므로 **감면 적용이 가능**
  2.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관련법령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에서 제외하나,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감면 허용함 (조특령 §27② 제5호)

※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663, '19.12.12.)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된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한 동 외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 외국인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함
* 국민연금법 제127조 :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국민연금법이 아닌 그 사회보장협정에 따름

## ❁ 검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감면 적용 배제를 취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국민연금법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이 당연히 제외되는 경우에는 조특령§27②제5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회보장협정 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제외 국가 적용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회보장협정 자료는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 '연금정보'에서 조회 가능

## 0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서비스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해당 비영리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열거된 **비영리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포함)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조특법§30①)

- 중소기업기본법§2①1호에는 영리기업을, 2호, 3호 및 4호에서는 비영리기업 중 중기령 §3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및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 중기령 §3의 요건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기준, 독립성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 범위)

  1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663, '19.12.12.)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 검토내용

- 조특법§30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에서 비영리기업은 중기법§2①**2·3·4·5**에서 열거된 비영리기업이 아닌 **비영리기업도 포함**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조특법§30①에 따라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으로만 규정하여도 해당 규정 2호~5호의 비영리기업은 당연히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중기법§2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열거된 비영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기업도 조특법§30에 따른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 비영리기업에 해당**합니다.

    ※ 비영리기업 중에서 중기법§2①2호의 사회적 기업과 제3호의 조합법인 등만을 감면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굳이 단서조항으로서 ( )안에 "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다만, 비영리기업도 중기령§3의 **매출액기준, 자산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03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동일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 사실관계

-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한 자가 **A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기업인 B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입사**한 경우 A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여부

  ※ 2011.8.1. A사에 취업하여 2013.7.9.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B사에 취업하여 2013.9.5.부터 2014.6.3.까지 근무함

  - B사에서 퇴사 후 2015.4.24. 다시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하여 근무




### ❁ 관련법령

'12.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 하였던 이력이 있는 자도 '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지만 (조특법 §30①후단)

- '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30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특법§30⑧)

## 해석사례(사전 - 2019 - 법령해석소득 - 62, '19.05.10.)

'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인 A사에 취업하였다가 퇴사 후 B사로 이직하고 다시 B사에서 퇴사하여 '12.1.1. 이후 중소기업인 A사에 재취업한 경우 조특법§30①의 감면적용 여부는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인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 검토내용

- 조특법§30⑧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로 한정하여 조특법§30⑧의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며,
  - 계약기간의 연장과 유사한 방식을 통해서 해당기업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세감면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경우라면 조특법§30⑧의 규정이 적용되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사실관계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위 사례와 같이 A사를 퇴사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을 통한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취업한 **A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04 청년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해당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

### ❁ 사실관계

- 2017.1.2.「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A에 취업한 후 2018. 2.28. 결혼을 사유로 퇴직한 자로서 2021.10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기업 B에 취업하는 경우,
  - **"청년"**의 자격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에 다시 **"경력단절 여성"**의 자격으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관련법령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조특법 §30①후단)

-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 조세특례제한법§29의3①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1년 이상 근무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2. 퇴직한 날부터 2년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해석사례(서면 - 2021 - 법규소득 - 5836, '22.11.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의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청년"**으로 쟁점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검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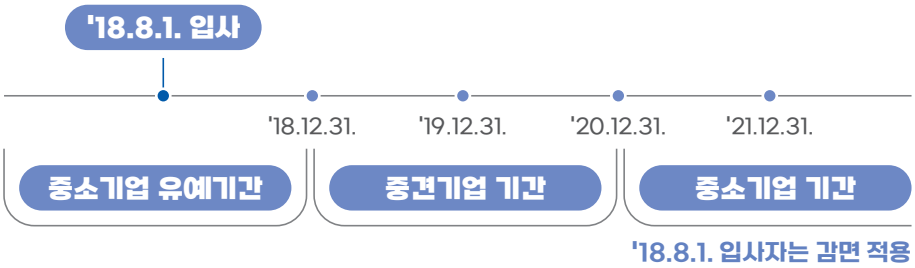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년"의 경우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 해당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결혼 등의 사유**로 **퇴직 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청년"으로서 감면을 적용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으로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청년"**으로서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후 **"경력단절여성"**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다시 **3년**간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05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가능 여부

### ❁ 사실관계

- 해당 기업은 2018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었고, 2018년 이전에 취업한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18년 이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함**
  -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고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은 입사일로부터 5년의 기간내에 다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관련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함(조특법§30①)

## 해석사례(서면 - 2021 - 법령해석소득 - 0697, '21.6.30.)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해당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100분의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검토내용

-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이 배제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5년 기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06 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 ❁ 사실관계

- 본·지점이 있는 사업장이고, 재무제표상 **주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지점사업장** 중 **업종**이 **서비스/유흥주점업**으로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음
  - 이러한 경우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본점의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함(조특령 §27③)

**7. 도매 및 소매업**

### ❁ 해석사례(서면 - 2024 - 원천 - 0618, '24.05.0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07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소속 직원들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 ❁ 사실관계

-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27년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2023년** 세무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유예기간 미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 적용**을 받은 경우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련법령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함(중기법 §2③)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유예기간은 **3년 → 5년**으로 확대(시행일 : '24.8.21.)

## 해석사례(서면 - 2024 - 원천 - 1456, '24.05.0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유예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검토내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유예제외 사유(중기령 §9)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3. 법 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Chapter 7

# 질의 및 응답

감면 신청 일반 Q1 ~ Q8

## Q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근로자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에 20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1.1.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17.1.1.)부터 2026.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 Q2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가능)

* 감면 신청 시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 Q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월 원천징수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 소득세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3.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 Q4 취업 당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소급하여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28, 2012.8.17.)

## Q5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감면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예. 감면신청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9.1.1.부터 적용)

※ 재직중인 근로자는 ① 본인이 회사에 감면신청 → ② 회사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③ 세무서는 감면 요건 검증 → ④ 회사는 감면율 적용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 감면신청서 및 ②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 Q6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취업자 소득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음. 지금 감면 신청하는 방법은?

회사가 폐업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 Q7 2022년 6월 중소기업 A 취업 당시 33세이고 2025년 6월 중소기업 B 취업시 36세인 경우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A사에 근무한 기간의 소득세 감면은 나이 등 요건 충족한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소득세 경정청구 하는 것이며,

◆ B사에 근무한 기간의 소득세 감면은 B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때, 감면신청서 작성 시 최초 취업일은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은 A사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감면기간시작일** : 2022년 6월, **감면기간** : 2022년 6월~2027년 6월

## Q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해야 하는 조치는?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근로자 재직 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2 **근로자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적용 일반 Q9 ~ Q33**

## Q9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12.31.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Q10 2011.12.31. 이전에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2.1.1.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2011.12.31.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2012.1.1.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법규소득2012-213, 2012.5.31.)

## Q11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그 해당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42, 2013.1.16.)

## Q12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13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원천세과-480, 2012.9.13.)

## Q14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Q15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연령에서 차감하는 군복무 기간과 제외 대상 병역의 종류는?

청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Q16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병역대체 복무한 기간도 연령계산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대체 복무한 기간은 청년 취업자의 연령계산시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취업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대상자에는 해당합니다.

## Q17 2023.10.1. 입사하여 초기 급여 등이 적은 관계로 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2024.1.1.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최초 취업은 언제인지?

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2023.10.1.이 최초 취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 Q18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예시)** 2021.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23. 4월 퇴사 후 1년간 휴직 이후 2024.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5년간(2021.4월~2026.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 Q19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네, 이전 중소기업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예시)** 2023.1월 A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4.2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4.2월~2029.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 Q20 2014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 종료된 청년도 2019년도에 감면 가능한가요?

예. 2018.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9년도 소득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2014. 5월에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2017. 5월에 3년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2018. 1월~2019. 5월(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가능합니다.

## Q21 2014~2019년까지 5년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유형:청년) 적용 받은 후 2020년 6월에 출산으로 퇴사하여 2023년 11월에 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예. 청년의 자격으로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은 후, 출산을 사유로 퇴사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경력단절 여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22 2016년 입사자로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취업 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은 감면율 90% (150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 Q23 2013~2017년 당시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도 2018년도 귀속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18.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당시에는 만 30~34세로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취업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013.7.10. 입사한 33세 청년의 경우

- '13.7.10. ~ '16.7.31. : 감면 요건 미충족('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6.8.1. ~ '17.12.31. : 감면 요건 미충족('17년 귀속 이전은 29세 이하 가능)
- '18.1.1. ~ '18.7.31. : 취업당시 연령 34세 이하로 감면 적용
  (감면율 90% 적용, 연 150만 원 한도)

## Q24 중소기업에 취업할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인지?

예.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1.1. ~ 2019.2.11.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 이후 취업자 : (장애인 범위 확대로 아래의 경우도 가능함)**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Q25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재소득-163, 2013.4.1.)

## Q26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청년 등이 주식을 양도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조특령§27②2)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청년 등이

- 주식양도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51, 2021.8.20.)

## Q27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당시 만 34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하는지?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 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직 시 연령요건 불필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09, 2016.12.20.)

## Q28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상 취업 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한 회사의 입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 하는 것인지?

재취업 이전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시)** 2013.7.1. 입사 후 이직, 2020.4.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20년부터 감면 적용 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20.4.1.

## Q29 개인 중소기업체에 2012.1.1.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감면을 받던 청년이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경우 감면 가능한지?

예.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법인 전환된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 2014-288, 2014.8.29.)

※ 합병, 분할, 사업양도 등으로 고용이 승계된 경우 감면 가능

## Q30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복무 기간 만료로 2011.12.31. 퇴사 후 2012년에 다시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2011.12.31. 이전에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1.1.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 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576, 2012.10.25.)

## Q31 정년퇴직 후 동일 회사, 동일 업무에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2023.12.31. 정년 퇴직 후 동일회사에 2024.1.10. 촉탁으로 재입사한 경우

- 계약연장과 같은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기업에 실제 계속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여 해당 기업에 재입사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며,
- '23.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근로자가 '24.1.1. 이후 동일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취업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상 퇴사 처리를 하고 실질은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는 근로계약서, 회사 내부규정 등 관련서류와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 예규 : 서면-2022-원천-4912(2023.4.10.)

## Q32 중소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가능한지?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63, 2019.12.12.)

## Q3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회사 내 "전무" 직위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감면제외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Q3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 제외

※ 유예제외 사유(중기령 §9)

1.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이 지난 경우
2. 중소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경우
3. 법 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 등의 증가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Q35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감면 대상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7③)**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2.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3.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
5.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6.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7. 부동산업('25.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8.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10.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2.28.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수의업은 제외)
1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2.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13.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다음의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 포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Q36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이 전혀 없어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나요?

예.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평균매출액의 상한선만 정하고 있을 뿐 하한선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속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업종의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https://kssc. kostat. go.kr:8443)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검토

## Q37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청년, 60세 이상 등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38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60세 이상의 직원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부동산업 > 부동산 관리업 >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므로 60세 이상 직원들은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Q39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천세과-542, 2012.10.11.)

## Q40 입사한 회사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 확대로 인해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중소 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예. 취업한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규모 확대 등으로 다음연도 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규소득2012-213, 2012.5.31.)

## Q41 중소기업의 유예(2021년~2023년)를 적용받는 기업의 감면 만료일은 중소기업확인서의 2024.3.31.인지?, 2023.12.31.인지?

예. 중소기업 유예(2021년~2023년)를 적용받는 기업의 감면 기간 만료일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2020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만료일은 2024.3.31. 입니다.(서면-2025-원천-0376, 2025.8.7.)

## Q4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던 회사가 매출액 감소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 때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기존에 계속근무자의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됩니다.

## Q43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 기업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비영리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 Q44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안됩니다. 합병일 이후 지급받은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24, 2014.1.13.)

※ 유사 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66, 2021.12.2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본 건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임

## Q45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경우 소속 직원들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4-원천-1456, 2024.5.9.)
-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예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Q4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조특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와 같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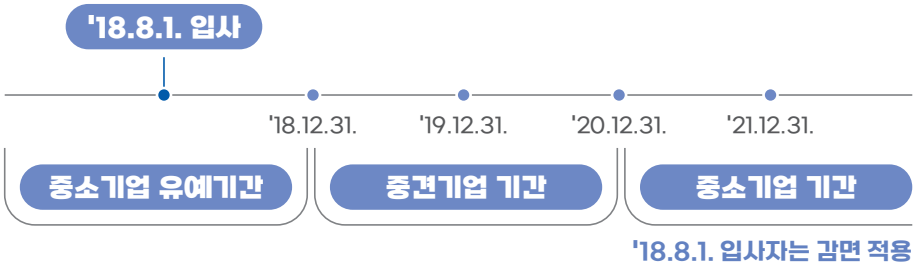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 Q47 본점은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나, 지점의 업종이 감면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네,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해당하더라도 본점의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 Q48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변경되고 이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초 중소기업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이 배제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중소기업 기간 또는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5년 기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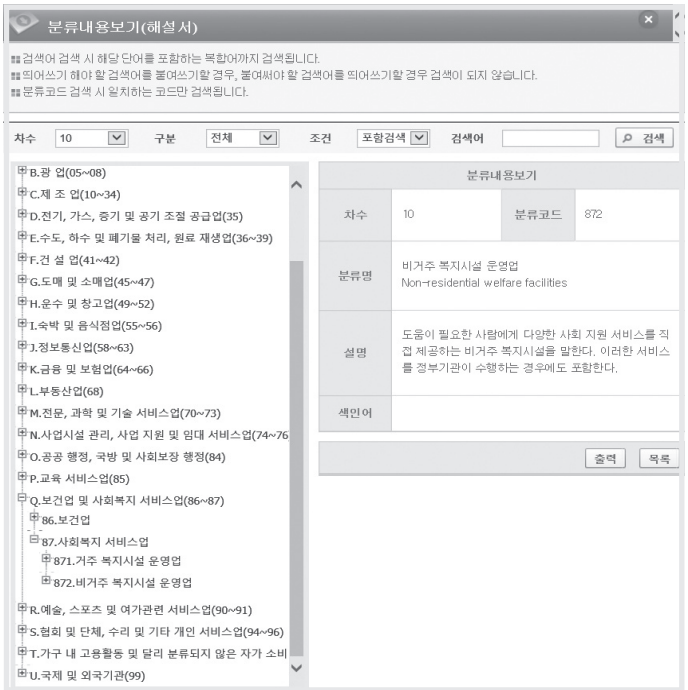
## Q4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업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업종 해당여부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며,

- 아래와 같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개요**




**화면설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선택하여 분류내용보기 (해설서) 검색

검색어에 관련 업종을 입력하고 검색하면 분류코드, 분류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등 조회가 가능

Chapter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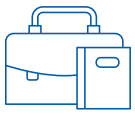
# 체크리스트

※ 감면요건 체크리스트

| 요 건 | | 검토내용 | 해당여부 | |
|---|---|---|---|---|
| | | | 여 | 부 |
| ① 중소기업 요건 | |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규모기준 충족하는지? | | |
| | | ◆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충족하는지? | | |
| | | ◆ 업종 : OOO<br>조특령 §27③에 열거된 업종을 충족하는지?<br>(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 |
| ② 감면 대상자 요건 | 제외대상 (공통) | ◆ 감면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지?<br>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br>②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br>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br>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br>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 |
| | 청년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지?<br>(2017년 소득분까지 15~29세 이하)<br>-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 |
| | 60세 이상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 | |
| | 장애인 | ◆ 조특령 §27① 제3호에 열거된 장애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 | |
| | 경력단절 근로자 | ◆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는지? | | |
| | | ◆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 | |
| | | ◆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 | |
| ③ 감면 기간 | 청년(5년) | ◆ 감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 | |
| | 그 외(3년) | ◆ 감면기간이 취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는지? | | |
| ④ 감면율 및 한도 | 청년 | ◆ 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br>- (감면율) 2018~ : 90%<br>- (한도) 2018~2022년 : 150만원, 2023년~ : 200만원 | | |
| | 60세 이상 장애인 | ◆ 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br>- (감면율) 2016~ : 70%<br>- (한도) 2016~2022년 : 150만원, 2023년~ : 200만원 | | |
| | 경력단절 여성 | ◆ 취업한 연도의 감면율과 한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br>- (감면율) 2017~ : 70%<br>- (한도) 2017~2022년 : 150만원, 2023년~ : 200만원 | | |

Chapter 09

# 신청 서식



##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하는 서식



##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대상 퇴직자 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6. 3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 | | |
|---|---|---|---|
| 1. 신청인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④ 취업자 유형 | [ ] 청년(15세~34세)<br>[ ] 60세 이상 사람<br>[ ] 장애인<br>[ ] 경력단절 근로자 |

**2. 취업 시 연령**

| | |
|---|---|
|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년 월 일 (취업일 : , 생년월일 : ) |
| ⑥ 병역근무기간*(6년을 한도로 함) |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 전역일·소집해제일 : ) |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⑥) | 년 월 일 |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 | |
|---|---|
| ⑧ 시작일* : 년 월 일<br>*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 ⑨ 종료일* : 년 월 일<br>*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br>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br>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br>없 음 |

##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2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동종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및 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근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6. 30.>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 | | | |
|---|---|---|---|
| **1. 원천징수의무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주업종코드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 성 명 | 주민 등록번호 | 취업일 | 취업자 유형 |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 |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 감면기간 |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 | | | | | |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 성 방 법

1.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⑧·⑨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4. "주업종코드" 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개정 2015.3.13.>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

| | | |
|---|---|---|
| **1. 원천징수의무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2. 감면 적용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입사일 | 퇴직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자가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통지일 이전에 퇴직하였음을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1부 | 수수료<br>없 음 |

210mm ×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이 책자의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서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 적용 시
반드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


- 발행일자 : 2025년 10월
-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집필·편집 : 원천세과장 **정헌미**
  행정사무관 **홍성훈**
  국세조사관 **이지연**
  국세조사관 **백신기**